

GYRI 도시정책정보

정책연구 리포트

(제목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금주의 키워드 : 지역화폐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이처럼 이번 호에는 지역 화폐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알아보고자 함.

관련 주요 정책 사례

▶ 경기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 438억 발행

화성시는 지난 해 지역화폐 인기에 힘입어 올해 지역화폐 438억을 발행할 예정이며, 상시 6%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향후 지역화폐 오프라인 발급처와 사용처 증대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경기 남양주시, 교통카드 기능 탑재한 지역화폐 출시

남양주시는 2020년 1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군 중 최초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연계 및 청소년 전용 지역화폐 카드 출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청 증가 유도할 예정

▶ 전라남도, 지역화폐로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급

전남도가 2019년부터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청년 취업 확대 계획.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만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849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예정

▶ 대전 대덕구, 설 명절 맞아 지역화폐 10% 할인

대전 대덕구는 지역의 소비-생산-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역화폐 ‘대덕 e로움’ 성공적 유치. 설 명절을 맞이하여 1~2월 두 달간 지역화폐 10% 할인을 실시하여 선순환 지역경제 기틀 마련에 주력

관련 연구보고서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019.11)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2018.12)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증가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광주전남연구원, 2018.0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2018.06)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주연구원, 2017.11)

지방자치단체 최신 조례 / 규칙

고양시 현황

[제정]

전남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1)

관련 조례 없음

충북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1)

관련 조례 없음

경기 용인시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01)

관련 조례 없음

전남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조례

이 조례는 나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1)

관련 조례 없음

[전부개정]

광주 서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1)

관련 조례 없음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1)

관련 조례 없음